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형용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6월 30일
-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(안 제3조)
-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, 위원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 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- 청소년 정책·사업 추진 시 위원회 의견 수렴·반영 및 위원회 의견·건의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처리결과 회신 의무 규정 (안 제8조)
-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 및 교류활동 참여 기회 부여 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○ 제출배경

- 최근 청소년 정책수립 시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권과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제도화 해야된다는 여론이 비등했으며
-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청소년 정책과 사업 과정에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논의가 진행되었음.

○ 주요내용 검토

가. 안 제1조(목적) 및 제2조(정의)

-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세이상 24세 이하인 자로함.

《청소년 기본법》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나. 안 제3조 (위원회 기능)

- 충청북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·건의 등 청소년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함.
- 이외 시·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,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, 토론회 개최 등 여론수렴 활동 등의 기능을 제시함.

《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》

- 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2.>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-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-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다. 안 제4조~제7조(위원회 구성관련)

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, 두 차례까지 연임 가능토록 했으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는 정기회의(연 4회 개최) 임시회의로 구분함.

라. 제8조(의견 수렴)

- 도지사는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함.

○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-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며,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할 것이며 입법적 차원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